

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원노동자 채용시험 공고

경상남도에서 공무원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6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근무예정부서	채용분야	선발예정인원	채용직군
도민봉사과	발간실요원	1명	<나> 직군 관련기능종사원

2. 응시자격 및 가점부여 요건

○ 공통자격 요건

-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

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제80조제1호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에 해당하는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80조(징계의 종류)

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고 :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.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화"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 * 정년 : 60세
 ※ 다만,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
- 거주지 제한 :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,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 -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 ※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주소지 합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, 거주기간은 "역에 의한 방법"에 따라 계산함(「민법」 제160조)
- 학력, 성별 : 제한 없음

○ 개별 가점부여 요건

채용분야 (근무예정부서)	가점부여 요건	점수표(최대 4점 이내)	
발간실요원 (도민봉사과)	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에서 인쇄(발간 포함)분야 근무경력	24개월 이상	2점
		13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1점
		6개월 이상 ~ 13개월 미만	0.5점
	채용분야 관련 자격증* 소지자 * 2개 이상 소지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점부여	인쇄기사	2점
		인쇄산업기사	1점
		인쇄기능사, 전자출판기능사	0.5점

- 공통자격요건, 필수자격요건, 개별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안내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함
 - 다만, 자격 및 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,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(예 :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자격증명서 등)
 - 자격증은 사본, 경력증명서·최종학력(졸업) 증명서 등은 원본 제출 기한 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가 미비하거나 미제출시에는 불인정

구 분	증빙자료	제출 및 증빙 요령
공통자격요건	주민등록초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소 변동이력 전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및 제출 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
근무경력 가점	경력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행기관(단체)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 한하여 인정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(주 20시간 근무 등) ▶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(근로계약서, 업무분장 등)를 별도 첨부
자격증 가점	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격증 사본(기술자격증 등) ▶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(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) ※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점부여

3. 주요 직무내용 및 근무시간

○ 주요 직무내용

근무예정부서 (채용분야)	주요 업무
도민봉사과 (발간실요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간실 장비관리 ○ 발간(인쇄, 제본, 편집 등) 업무 지원

○ 근무시간

근무예정부서 (채용분야)	근무시간
도민봉사과 (발간실요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5일(월~금) 근무 - 09:00~18:00, 8시간, 휴게 1시간 포함

※ 근거 :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46조(근로시간)에 의거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47조(연장·야간·휴일근로)에 의거 소속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원노동자 등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4. 시험 방법

○ (서류전형)

- 응시자격 공통요건 기준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, 응시연령 충족 여부, 직무수행 관련 필수 및 개별 가점부여 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
- 응시인원이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한 전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처리
- 선발예정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개별 가점부여 요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선발예정인원의 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

선발예정인원	서류전형합격자	결정기준
1명	7배수 이내	① 서류전형 개별가점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있어 배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동점 인원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(단,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) ② 응시인원이 서류전형 합격자의 배수 기준 이내일 경우 또는 서류전형 개별가점에 해당하는 자가 전혀 없을 경우 응시자 공통자격 요건에 적합한 인원은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

○ (인성검사)

-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 검사 진행*
 *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
 - 개인별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 안내

○ (면접시험)

- 면접대상 :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
- 평가방법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아래 5개 평정항목에 대해 평가함(총점 100점 기준)
 - ① 공무직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건강상태(25)
 - ②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(30)
 -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(10)
 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15)
 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20)

※ 면접위원 중 회피(기피) 신청(피신청) 시 처리 방안

회피(기피) 신청한(된) 면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값까지 반영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-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
 -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위원 최고점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와 개별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
 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(제출서류 10번 참고)를 우선하여 선발
 - 그 외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우선순위
 - (1순위) 면접시험 총점 고득점자
 - (2순위)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평정항목 순 고득점자
 - ※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(30), 공무직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건강상태(25) 등 순
 - (3순위) 개별가점 고득점자

***면접시험 불합격 기준**
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점수 100점 중 6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항목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요소별 배점의 60% 이하로 평정한 경우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경상남도 홈페이지 '경남채용'란 게시

5. 시험일정

채용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 (예 정)	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
'24. 5. 16.(목)	5. 28.(화) ~ 5. 30.(목) 기간 중 업무시간 내(09:00~18:00)	6. 25.(화)	7. 3.(수) ~ 5.(금)	7. 16.(화)

※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

⇒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도 홈페이지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 '경남채용'란 게시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 : 응시원서는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작성
- 응시수수료 : 없음
- 접수기간 : '24. 5. 28.(화) ~ 5. 30.(목) 09:00~18:00 ※ 점심시간 12사~13시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방문접수 장소 : 경남도청 민원접견실(본관 1층)
 - ※ 등기우편주소 : ☎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(사림동) 경상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

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

- ❖ 등기우편 접수는 **마감일 소인분에 한정**(택배,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)
 - *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(055-211-3529) 확인 후 송부
- ❖ 응시표 회신을 위한 일반 편지봉투 동봉(등기용 우표부착, 수신인 성명·주소 기재)

7. 제출 서류

- ① **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**(붙임 양식)
- ② **응시원서 1부**(붙임 양식)
 - ▶ 응시부서, 응시분야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, 중복응시 불가
- ③ **이력서 1부**(붙임 양식)
 -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불가)
- ④ **자기소개서 1부**(붙임 양식, A4 3매 이내)
- ⑤ **주민등록초본 1부**(전체 주소 변동내역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
 - ▶ “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주민등록번호 기재)”를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
- ⑥ **경력증명서 1부**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- ▶ **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**
 - ▶ **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**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발급일 기준
 - ▶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별도 첨부(**근로계약서, 업무분장표 등**)
 - ▶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에 경력 인정 원칙
 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**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**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점 해당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⑦ **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**(원본)
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- ▶ **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** 발급
 - ▶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**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(증명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인정)**
- ⑧ **자격증, 면허증 사본 1부**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- ▶ 자격(면허)증 유효기간 :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유효한 것
- ⑨ **최종학력(졸업) 증명서(원본) 1부**
- ⑩ **보훈(지)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 증명서**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- ▶ 해당 분야의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적용되지 않으나, 전형별 합격자 결정 시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- ⑪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**(붙임 양식)

- ⑫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붙임 양식)
- ⑬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(붙임 양식)
- ⑭ 기타 개별 자격요건, 가점 관련 서류 등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
- ▶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
- ▶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·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
(예시 :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자격증명서 등)
- ▶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채용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, 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이 취소됨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
- 재공고의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(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)
-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

9. 보수 수준 및 신분 보장

- 근 거 :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적용(이하 "규정")
- 임 금 : 매년 도지사가 결정(규정 제69조)
- 정 년 : 60세까지(규정 제76조)
- 근로계약 : 소속부서의 장과 공무원노동자 간 체결(규정 제39조)

10. 응시자 유의사항

-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- 최종합격자의 근무경력은 채용 후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, 그 이외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존 및 파기합니다.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응시자격 검증,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, 선발취소,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공무직노동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「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등에 따름
-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 '경남채용'란 게시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
 - 채용시험절차 관련 문의 :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(055-211-3529)
 - 직무내용, 근로조건, 보수 등 관련 문의

근무예정부서 (근무지역)	채용분야	연락처
도민봉사과 (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)	발간실요원	055-211-3693

끝.